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20호  
2019. 5. 16.(목)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712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제712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8

제712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제712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3

제712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제7129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 16

제7130호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20

제71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제713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제7133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제713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제7135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제713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제7137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제7138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제7139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제7140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제7141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제7142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제7143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축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제7144호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6

제7145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제7146호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제7147호 서울특별시 정교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제7148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제7149호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견 조례 ..... 56

제7150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제7151호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60

제7152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62

◆ 서울특별시조례 제713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으로 하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역,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2019년 6월 5일)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